

2021년도 제2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: 2021. 8. 10.(화요일), 10:30
- 장 소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 - 심의위원: 홍지만(분과위원장), 김민아, 박정인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21-195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〈의결안건〉 ※ 안건 검토 보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

시정권고 심의

- 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1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14건(안건번호 제2021-96835호~98748호)
 - 회의결과: 안건번호 제2021-96835호는 영화상영관에서 녹화한 영화의 캡처 화면을 이용한 게시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점, 전체 이미지 185개 중 180개 이상이 영화의 캡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, 복제물과 비교하면 직접 작성한 게시글이나 보호해야 할 표현이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96836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사람과 업로드된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 및 제공한 사람이 동일인으로 보이는 점, 심의대상 게시물은 ‘저작권 침해 정보’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“불법복제물등”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나,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및 전송중단의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96837호~96842호는 웹하드에 만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96843호~96845호는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

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.

안전번호 제2021-96846호~96848호는 티스토리예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.

안전번호 제2021-96849호~96880호는 웹하드에 만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.

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,998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

○ 제2호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- 주요내용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4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239개의 URL 정보에 관한 '구글'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(안전번호 제2021-10223호~10461호)
- 회의결과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4개, 총 239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.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
2. 전차(제2021-195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.
- A 위원: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.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.
- B 위원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,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.

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C 위원: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보면 영상이 26초이고 정지화면이 180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요즘 영화 영상은 1초에 30프레임 가량으로 캡처 영상 180개면 딱 6초짜리 분량 정도가 됨. 복제된 영상의 분량이 26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?
- 오진해 전문위원: 영상 형태의 복제물이 2개로 각 4초, 22초 총 26초임. 영화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캡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정지 캡처화면이 180개로 약 33초에 1장꼴임.
- C 위원: 정지화면이 180개이면 실제로는 개당 6초 미만의 분량일 것임.
- 오진해 전문위원: 프레임 단위 캡처인 정지화면이 아니라 영화 전체 내용을 담은 것으로, 정지화면을 보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과 같은 대체효과가 어느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.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-96835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.
- A, B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968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

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 안전번호 제2021-96836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○○○○○이라는 사이트에 게시된 오디오북 다운로드 링크 게시물을 신고한 사안임. 심의대상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. 오디오북 파일이 게시된 원천 게시물인 해외 클라우드는 파일이 업로드 후 7일 후에는 자동 삭제되고, 클라우드에서 원천게시물이 삭제되면 심의대상 링크게시물의 게시자가 링크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임.

- C 위원: 앞으로 이러한 게시물이 계속 삭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?
- 오진해 전문위원: 만일 원천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더라도,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링크 게시물이 남아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링크 게시물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하여 경고만 할 수도, 삭제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.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-9683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.
- A, B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96836호는 게시물에 대해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6837호~9684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A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
- B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96837호~9684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6843호~9684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네이버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A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- B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96843호~9684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6846호~9684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티스토리에서 게시된 자막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B 위원: 자막파일은 영리성이나 매니아들의 취미성 작업 여부 등을 따져서 시정권고를 결정하고 있는지?
- 오진해 전문위원: 자막은 영상 불법복제물 없이 독립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, 자막만 게재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이용형태

에 따라 조금 다르게 검토를 하고 있음. 자막 배포의 규모나 영리성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.

- C 위원: 원어 자막을 보고 번역한 것이라면 시정권고가 충분히 가능한데, 만약에 대사를 귀로 듣고 자막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, 해당 부분에 대해 구분이 가능한지?

- 오진해 전문위원: 사실 원어 자막을 이용한 것인지, 대사를 듣고 만들었는지 자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음. 다만 민원신고로 들어오는 건들은 최신 애니메이션의 자막들이 많은데, 이런 경우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작품이나, 수입되었으나 아직 방영 전인 최신화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,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귀로 듣고 바로 작업해서 올려 놓는 것 같음. 반드시 문자로 된 대본이나 자막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, 우리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강연도 어문저작물이라고 하듯이 연기한 대사를 번역하는 것도 똑같이 어문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.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-96846호~96848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.

- A, B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96846호~9684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6849호~96880호는 민원인이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A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
- B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96849호~9688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6881호~9874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, 프로그램, 게임, 출판,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

(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)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.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음악 '(음악)신호등 (가수: 이무진)'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96932호 '(음악)신호등 (가수: 이무진)'는 2021. 5. 14. 발매한 국내 음원으로 웹하드에서 500포인트에 판매중임.

(게임 ‘(게임)발하임 Valheim (2021)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 안전번호 제2021-97000호 ‘(게임)발하임 Valheim (2021)’는 2021. 2. 2. 발매한 PC게임으로 웹하드에서 150포인트에 판매중임.

(영화 ‘(영화)분노의 질주: 더 얼티메이트 (2021)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 안전번호 제2021-97256호 ‘(영화)분노의 질주: 더 얼티메이트 (2021)’는 2021. 5. 19. 공개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00포인트에 판매 중임.

(영화 ‘(영화)바람의 검심 최종장: The Final (2021)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 안전번호 제2021-97992호 ‘(영화)바람의 검심 최종장: The Final (2021)’는 2021. 7. 30. 공개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330포인트에 판매 중임.

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4건을 포함한 2,998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.
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-96881호~9874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.
- A, B 위원 (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)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홍지만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96881호~98748호 중

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안전번호 제2021-96836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-96835호, 제2021-96836호, 제2021-96837호~96842호, 제2021-96843호~96845호, 제2021-96846호~96848호, 제2021-96849호~96880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-96881호~9874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”

○ 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6쪽은 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.

(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0223호~10461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”

4. 폐회 선언

-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2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.

2020년 제21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8. 18.

분과위원장 홍지만

위원 김민아

위원 박정인